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호 중 “**기사 자격**”을 “**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)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「국가 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안전 관리(전기안전)·토목·기계 분야 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수행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해당 분야의 <u>기사</u>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(생략) ② (생략)	제33조(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기사</u> 또는 <u>기능장</u> <u>자격</u>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